

2019년도 2/4분기

#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

2019. 8.

감사위원회

# 1. 개요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  
“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보고대상

- 기 간 : 2019. 4. 1. ~ 6. 30.(2019년 2분기)
- 대 상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원순씨 핫라인) 및 오프라인(우편, 방문 등)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

## □ 접수결과

- 2019년 2분기 총 200건 접수

[표 1] 2019년 2분기 창구별 월별 접수현황 (단위: 건)

접 수 창 구	합 계	4월	5월	6월
공 익 신 고	61	25	21	15
공직자비리신고	134	43	47	44
부 정 청 탁	2	1	1	-
퇴직공무원특혜	3	-	-	3
합 계	200	69	69	62

※ 전 분기(2019년 1분기) 접수 건수 230건에 비해 13.0% 감소  
전년 동 분기(2018년 2분기) 접수 건 192건에 비해 4.2% 증가

## 2.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

### □ 제보 경로 분석

[표 2]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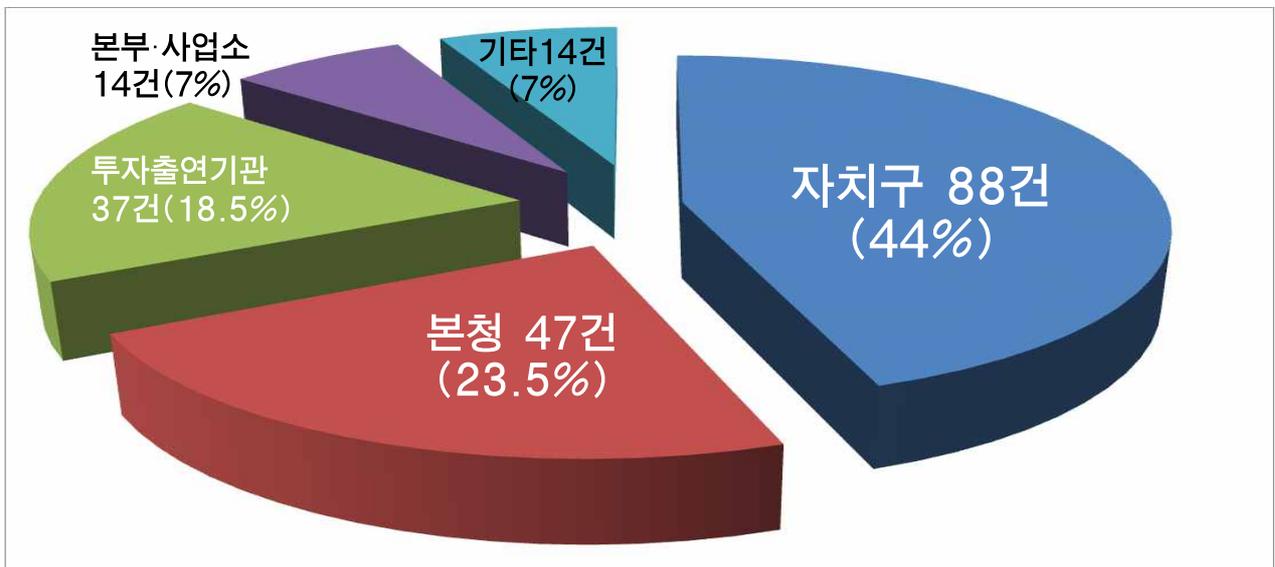
(단위: 건)

경로	합 계	온 라 인 홈페이지/모바일	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	기 타 응답소/우편/방문/팩스
접수건수	200 (100%)	177 (88.5%)	16 (8.0%)	7 (3.5%)

\*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

### □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

-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88건(44%)으로 가장 많았음
  - 건축법/식품위생법/공동주택관리법 등 공익신고 31건
  - 업무부적정·복무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54건, 부정청탁 2건, 퇴직공무원 특혜 1건
- 본청 소관 사무 제보 47건(23.5%), 본부/사업소 소관 14건(7%)
  -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11건, 공직자비리신고 34건, 퇴직공무원 특혜 1건
  - 본부/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4건, 공직자비리신고 10건
-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37건(18.5%), 기타 14건(7%)
  -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10건, 공직자비리신고 27건
  - 기타 14건(검정, 중앙부처 등 타 기관 해당)



# 3. 공익제보 분류

## □ 제보내용의 분류

○ 접수된 200건 재분류 결과,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40건

[표 3]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 (단위 건)

총계	공익제보 해당 148건		일반민원/기타
	부패신고	공익신고	
200 (100%)	106 (53%)	34 (17%)	60 (30%)

\* 청원/제안/건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

### ※ 조례상 ‘공익제보’ 해당 신고 범위

구분	개요	신고 대상 행위
부패 신고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부패행위”신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li> <li>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b>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b>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li> <li>3.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li> </ol>
공익 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공익침해행위”신고	식품위생법,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b>284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b>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도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 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

## 4. 제보내용 유형 분석

### □ 제보 세부내역

#### ○ 부패신고 해당 106건 세부 내용

[표 4]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

(단위 건)

구분	소관기관	건수	내 용
부 당 수 급	본 청	3	보조금 유용 등
	자 치 구	1	
	소 계	4	
복 무	본 청	2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근무지 내 출장 부정 등 복무 관련
	본 부 · 사 업 소	2	
	자 치 구	11	
	투 자 출 연 기 관	1	
	소 계	16	
불 공 정 계 약	본 청	9	입찰 계약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등
	본 부 · 사 업 소	5	
	자 치 구	6	
	투 자 출 연 기 관	6	
	기 타	1	
	소 계	27	
업 무 부 적 정	본 청	20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고의 또는 미숙/부주의로 발생한 사건 (업무 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
	본 부 · 사 업 소	5	
	자 치 구	20	
	투 자 출 연 기 관	4	
	소 계	49	
인 사	자 치 구	3	채용, 승진,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등 기관의 부적정 인사 관련
	소 계	3	
품 위 손 상	본 청	4	공무원 등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 미준수 행위 등
	자 치 구	1	
	투 자 출 연 기 관	1	
	소 계	6	
횡 령	자 치 구	1	
	소 계	1	
총	계	106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

## ○ 공익신고 해당 34건 세부 내용

[표 5]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

(단위 건)

구 분	건수	소관기관	조치 상황	내 용
개인정보보호법	1	자 치 구	개선1	업무처리 중 개인정보 노출의혹
건설산업기본법	1	자 치 구	조사중1	타인명의 면허대여 공사
건 축 법	7	자 치 구	조치5, 개선1, 해당없음1	미신고 불법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	4	자 치 구	개선1, 조사중1, 해당없음2	관리사무소 부적정 운영 등
노 인 복 지 법	1	자 치 구	해당없음1	학대 의혹
도 로 법	1	자 치 구	조치1	도로 공사 안내판 미부착
소 방 법	1	본부사업소	개선1	화재경보기 미작동 등
식 품 위 생 법	6	자 치 구	개선2, 증거불충분1, 민원취하2, 해당없음1	음식점 위생조건 미비
약 사 법	1	자 치 구	개선1	처방기준 미준수
여객자동차운수법	2	본 청	조치1, 개선1	불법 영업 의혹 등
영 유아 보 육 법	2	자 치 구	개선1, 조사중1	어린이집 관리부실 등
옥 외 광 고 물 법	1	자 치 구	조치1	불법적 광고물 및 입간판 설치
의 료 법	1	자 치 구	개선1	의료기관 진료과목 허위표시
자 동 차 관 리 법	1	자 치 구	조치1	차량번호판 고의적 가림
자 원 재 활 용 법	1	자 치 구	증거불충분1	매장 내 일회용 사용
전 자 상 거 래 소 비 자 보 호 법	1	본 청	조사중1	포인트 환급 거부
폐 기 물 관 리 법	2	자 치 구	조사중1, 증거불충분1	폐기물 무단 방류 등
총 계	34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

# 5. 처리 결과

## 처리 내역 ('19. 8.6. 현재)

[표 6] 접수제보 처리 현황

(단위 건)

총계	처분 및 개선 67		종결 83				조사중	취하
	처분(조치)	개선 등	해당 없음	증거 불충분	중복 종결	권한 없음		
200	12	55	42	13	15	13	37	13

※ 개선 등 내역 : 구두경고, 주의촉구,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

※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5항)

## 처분(조치)사항

[표 7] 공익제보 조치 결과(요구 포함)

(단위 건)

번호	신고구분	신고 내용	처분기관	조치 내역
1	부패신고	기업과 부실 협약	감사위원회	개선 통보
2	부패신고	봉사활동시간 부당 인정	감사위원회	징계요구 2
3	공익신고	불법광고물 설치 신고	자치구	시정명령
4	공익신고	건축물 무단 증축	자치구	시정명령(사전통지)
5	공익신고	건축물 무단 신축 신고	자치구	공사중지명령
6	부패신고	위탁기관 내 부당행위	감사위원회	징계1 등, 환수3,500천원
7	공익신고	아파트 공유부분 사적 사용	자치구	시정명령(사전통지)
8	공익신고	차량번호판 고의적 가림	자치구	과태료 부과(50만원)
9	공익신고	상가 공용부분 사적사용	자치구	시정명령(사전통지)
10	부패신고	다단계업체 단속 관련 업무 부적정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11	공익신고	도로공사 관련 부조리, 유착	자치구	주의조치(요구)
12	공익신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신고	자치구	철거명령